■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신설 2011.3.1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대한 기준(제88조의3 관련)

1. 성능기준

1)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1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 또는 최소압력이 150kPa인 공기압 중 큰 공기압에 도달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2)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4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에 도달한 후 6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3)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내에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전송하는 데 영향을 주는 기능고장이 발생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다만, 무선주파수 잡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기능고장 감지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 1. “운행공기압”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각 타이어의 “추천냉간팽창공기압”이 온도영향으로 증가된 타이어팽창공기압을 말한다.
2. “추천냉간팽창공기압”이란 해당 자동차의 속도 및 하중 등 사용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각 위치의 타이어에 대하여 권장하는 타이어공기압(타이어공기압 표찰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을 말한다.

2. 경고표시기준

1) 자동차에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은 기능고장을 표시하는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가)” 및 “나)”에 적합할 것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을 표시하기 위하여 점멸되어야 하며, 짧은 시간경과 후 기능고장이 있고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나) 기능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마다 위 “가)”에 따른 점멸 및 점등의 순서로 작동이 반복될 것
2)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는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정할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초기화상태를 알리기 위하여 점멸될 수 있다.

3. 표기기준

1)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을 표기할 것. 다만, 제작자가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기판넬 등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아래 “가)” 및 “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설치를 알리는 문구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재설정방법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재설정기능이 있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나)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형상과 기능고장 식별부호 형상(기능고장 전용 식별부호가 설치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다)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점등에 대한 현상설명 및 올바른 조치방법